

# 2019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FAQ)

2019. 3. 6.(수)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장학부

# I 장학금 신청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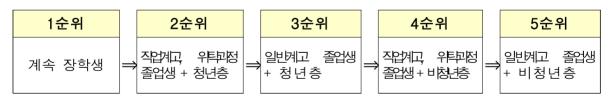
## 1. 장학금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Α

- ☞ 선취업-후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적·성적·재직 등의 요건을 충족한 학생을 선발

항목	상세요건
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단,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허용 (※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학적	지원 대상 대학 <sup>1)</sup> 의 학부 재학생
성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산정된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2019.1.1까지 재직기간 <sup>2)</sup> 이 3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중견기업 <sup>3)</sup> 에 재직 중인 자

- 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 단,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재정지원 II유형 대학과, 군인으로서 E-MU학과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제외
- 2) 재직기간은 고용보험가입정보(시작일~종료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업유형 및 규모는 무관
- 3)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단,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이나, '재직의무 이행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지원 제외함(상세 내용 업무처리기준 참고)
- ☞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선발 우선 순위) 계속장학생을 우선 선발하며, 직업계고 졸업자 및 청년층(만 34세 이하)을 우선하여 선발



- ※ 직업계고 졸업생에는 일반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포함
- ※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생 → 일반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순으로 선발하고 저학년을 우선 선발

## 2. '19년 1학기 신·편입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성적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Α

☞ 신·편입생도 소속대학이 확정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없으므로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검정고시에 합격해 고졸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Α

☞ 신청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정보는 학교명을 '검정고시'로 조회하신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4.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Α

☞ 부 또는 모가 대표인 중소·중견기업(부모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장학금 신청 전 부모기업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8. 12. 19.(2019. 1. 1.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어 현재 무직인 상태입니다. 이전 재직하였던 직장이 중소기업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 신청 불가능합니다.

2019. 1. 1.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6. 2019. 1. 2.에 중소기업에 취직하였습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A

☞ 신청 가능합니다.

2019. 1. 1이 공휴일이므로, 그 익일에 중소기업 재직 또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요건 재확인 요청과 심사를 통해 인정됩니다.



## 7.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Α

☞ 네. 자영업을 운영하여 본인이 기업의 대표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8. 과거에 학점은행제를 이수해서 학위가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Α

☞ 네, 가능합니다. 단,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가 전문학사여야 하며, 해당 학위를 가지고 전공심 화과정에 진학하거나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학사 취득 전 3 년 이상의 재직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요건재확인 요청 및 심사를 통해서 위 학력 요건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9. 전문학사 취득자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Α

☞ 네, 가능합니다. 단, 전문학사 학위를 가지고 전공심화과정에 진학하거나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학사 취득 전 3년 이상의 재직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요건재확인 요청 및 심사를 통해서 위 학력 요건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10.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전공심화에 진학한 사람입니다. 동일학교 내에서 전공심화만 인정되나요?

## A

☞ 아닙니다, 타 학교로의 전공심화 진학도 인정됩니다. 단, 해당 학위 취득 전 3년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의 경우, 요건재확인 요청 및 심사를 통해서 학력 요건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11.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 넷째, 다섯째 두 자리 82). 장학금 신청 가능한가요?

#### Α

☞ 원칙적으로 비영리 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라 해도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12. 현재 지방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Α

☞ 신청 불가능 합니다.

아쉽지만, 공무원은 <2019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를 사업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13. 건물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재직 중인 기업의 업종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Α

☞ 네, 가능합니다. 2019년 1학기부터 2차 신청부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14. 소규모 감정평가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2019년 1학기부터 2차 신청부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15. 주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Α

☞ 아쉽지만, 기업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주점업에 종사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직 기업의 업종이 제외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표준산업분류표 중 소분류 기준) 업종코드   156211     156212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3     156219     156213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3     156213     156213     156219     156213     156213     156219     156213     156213     156213     156213     156213     156213     156213     156213     156213     156219     156213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3     156219     156219     156213     156219     156219     156213     156219     156219     156213     156219     16221     16221     16221     16221     16221     16221	업종 예시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입법기관 중앙 최고 집행기관 지방행정 집행기관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기타 일반 공공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교육 행정 문화 및 관광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노동 행정 성례 및 운송 행정
지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156212 156213 156219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084111 084112 084113 084114 084119 084120 084211 084212 084213 084214 084214 084222 084223 084223 084224 084229 084310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입법기관 중앙 최고 집행기관 지방행정 집행기관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기타 일반 공공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교육 행정 문화 및 관광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노동 행정 농림수산 행정
지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156213 156219 156219 156219 156219 156219 159142 1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입법기관 중앙 최고 집행기관 지방행정 집행기관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기타 일반 공공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교육 행정 문화 및 관광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노동 행정 농림수산 행정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기타 주점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입법기관 중앙 최고 집행기관 지방행정 집행기관 지방행정 집행기관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기타 일반 공공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교육 행정 문화 및 관광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노동 행정 농림수산 행정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입법기관 중앙 최고 집행기관 지방행정 집행기관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기타 일반 공공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교육 행정 문화 및 관광 행정 환경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노동 행정 농림수산 행정
이용4111 이용4112 이용4113 이용4114 이용4119 이용4119 이용4120 이용4211 이용4212 이용4213 이용4214 이용4214 이용4219 이용4221 이용4222 이용4223 이용4223 이용4224 이용4229 이용4229 이용4229 이용4310	입법기관 중앙 최고 집행기관 지방행정 집행기관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기타 일반 공공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교육 행정 문화 및 관광 행정 환경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노동 행정 농림수산 행정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084112       084113     084114       084119     084120       084211     084211       084212     084213       084213     084214       084219     084219       084221     084222       084223     084224       084229     084310	중앙 최고 집행기관 지방행정 집행기관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기타 일반 공공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교육 행정 문화 및 관광 행정 환경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노동 행정 농림수산 행정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084113       084114     084119       084120     084211       084211     084212       084213     084213       084214     084219       084221     084221       084222     084223       084224     084229       084310	지방행정 집행기관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기타 일반 공공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교육 행정 문화 및 관광 행정 환경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농림수산 행정
이용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기타 일반 공공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교육 행정 문화 및 관광 행정 환경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노동 행정 농림수산 행정
지하는 전체 14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교육 행정 문화 및 관광 행정 환경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노동 행정 농림수산 행정
084120       084211       084212       084213       084214       084219       084221       084222       084223       084224       084229       08431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교육 행정 문화 및 관광 행정 환경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노동 행정 농림수산 행정
이용4211       이용4212       이용4213       이용4214       이용4219       이용4221       이용4222       이용4223       이용4224       이용4229       이용4310	교육 행정 문화 및 관광 행정 환경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노동 행정 농림수산 행정
084212       084213       084214       084219       084221       084222       084223       084224       084229       084310	문화 및 관광 행정 환경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노동 행정 농림수산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084213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084219       084221     084221       084222     084222       084223     084224       084229     084310	환경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노동 행정 농림수산 행정
지하고 및 산업정책 행정	보건 및 복지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노동 행정 농림수산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노동 행정 농림수산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노동 행정 농림수산 행정
084221       084222       084223       084224       084229       외무 및 국반 해정	노동 행정 농림수산 행정
084223 084224 084229 외무 및 국반 해정	97.7
084224       084229       외무 및 국반 해정	건설 및 운송 행정
O84229 외무 및 국반 해정 O84310	
외무 및 국반 해정 O84310	우편 및 통신 행정
외무 및 국방 해정	기타 산업 진흥 행정
외우 및 국망 행정	외무 행정
O84320	국방 행정
O84401	법원
O84402	검찰
UH PL 고고 지나 해당 084403	교도기관
사법 및 <del>공공</del> 질서 행정 084404	경찰
084405	소방서
O84409	기타 시법 및 공공 질서 행정
<b>사회보장 행정</b> 084500	사회보장 행정
R91223	노래 연습장 운영업
R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R91291	무도장 운영업
<b>기구 내 고용활동</b> T97000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1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T982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1 199001	
국제 및 외국기관 U99009	주한 외국 공관

## 16. 현재 군인입니다.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 ☞ 신청 불가능합니다.

아쉽지만 군인 또한 <2019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사업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 (중건)기업 재직자를 사업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 17. 현재 대기업에 재직 중인데 소득이 낮습니다.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Α

#### ☞ 신청 불가능합니다.

아쉽지만 대기업 재직자의 경우, <2019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사업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중건)기업 재직자를 사업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 18. 현재 규모가 작은 외국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Α

#### ☞ 신청 불가능합니다.

아쉽지만 외국기업 재직자의 경우, <2019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사업의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사업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 19. 현재 직장을 두 곳 다니고 있습니다. 한 곳은 중소기업인데 다른 한 곳은 아닌 경우, 신청대상이 되나요?

#### Α

☞ 현재 다니고 계신 두 군데 중 어느 곳이라도 중소기업이고 현재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 20. 2019년 1학기 1차 심사 때 불합격했는데, 2차 때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A

#### ☞ 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1학기 2차 심사부터는 제한업종 요건, 학력제한 요건 등이 변경되었습니다.(부동산업 지원 가능, 전문학사 취득자 일부 지원 가능) 주요 변동 사항을 '2019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서 확인하시고,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2차 신청기간 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21. 재학 중인 대학이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 II 유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 Α

☞ 지원 가능합니다.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다음 연도의 신·편입생부터 지원이 불가합니다.

- 2018년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19년 이후 신·편입생부터 지원 불가
- 22. 재학 중인 대학이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 II 유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에 신입생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 Α

☞ 지원 불가능합니다.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다음 연도의 신·편입생부터 지원이 불가합니다.

- 2018년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19년 이후 신·편입생부터 지원 불가

## 23. 현재 E-MU 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 Α

☞ 지원 불가능합니다. 아쉽지만, e-MU 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의 경우, 장학금 지원 대 상이 아닙니다. 다만, 군인이 아닌 경우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Ⅱ 장학금 신청 방법

## 24.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Α

- ☞ 본인 명의 은행발급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개별적으로 본인신청이 신청합니다.**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장학금 → 국가 교육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

## 25.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Α

☞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 우선순위 산정 시 검토되는 고교 졸업증명서(직업계고 학생), 일반계고 위탁교육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출산여성) 등은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선택적으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 26. 신청화면에 있는 일반계고 위탁과정이 무엇인가요?

## A

- ☞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고3 시기에 진로를 변경하여 위탁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계고 학생이 직업위탁과정을 수료한 경우, 선발 우선순위 산정(직업계고 > 일반계고 위탁과정 > 일반계고 순)에 반영 됩니다.
  - 일반계고 위탁과정 인정이 필요한 학생은 장학금 신청 시, 위탁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 또는 직업교육이 확인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선택사항)

## 27. 장학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 A

☞ **학기당 등록금 전액입니다.** 단,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은 변동 가능합니다.



## Ⅲ 계속장학생 및 의무재직

28. 2019년에 1학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2019년 2학기에 다시 신규로 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 Α

☞ 아닙니다, 2019년 1학기에 선정된 장학생부터 계속장학생으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2019년 2학기 부터는 계속장학생 요건(성적, 학적, 의무재직 이행, 수혜횟수 등)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29. 이전 수혜 학기에 의무재직을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계속장학생으로서 선발될 수 있나요?

#### A

☞ 의무재직 불이행분에 대해 계속장학생 재단 최종심사 전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계속장학생 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30. 의무재직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 A

☞ 장학금 수혜학기가 포함된 반기의 반기 시작일(1학기 1.1, 2학기 7.1)부터 반기 종료일(1학기 6.30, 2학기 12.31)을 기준으로 의무재직 이행기간을 산정합니다. 해당 기간 내, 수혜 받은 학기에 해당하는 4개월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합니다.



31. 2018년 2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입니다. 업무처리기준을 볼 때 2019년 1학기 의무재직 기간은 1.1~6.30인데, 1.1~2.28의 경우 중복으로 의무재직 기간에 산정이 가능한가요?

#### Α

☞ 중복으로 의무재직기간 산정은 불가합니다. '18년 2학기 및 '19년 1학기 모두 수혜한 경우, '19.1.1~2.28 기간의 재직은 먼저 선발된 의무재직 불이행분에 대해 우선 산입됩니다. 만약 '18-2학기, '19-1학기 모두 의무재직을 미이행한 경우, 2개 학기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며,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계속장학생 선발을 허용합니다.

<'19년 선발시기 변경 등으로 인한 의무재직 기간 및 선발에 관한 한시적 예외>

- 1. 의무재직 기간: '18-2학기 수혜자 '18.9.1~'19.2.28., '19-1학기 수혜자 '19.1.1~'19.6.30.
  - ※ '18년 2학기 및 '19년 1학기 모두 수혜한 경우, '19.1.1~2.28까지 재직은 먼저 선발된 의무재직 불이행분에 대해 우선 산입
- 2. 한시적 예외
- '18-2학기, '19-1학기 합격자에 대해서는 2개 학기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선발 허용
- '19-1학기 선발자의 경우, '19-1학기 의무재직 불이행분이 의무재직기간 반기 종료일('19.6.30) 기준 2개월 이하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없이 '19-2학기 사업 참여 가능(2개월 초과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 '19-1학기 수혜자 중 '19-2학기 장학금 수혜를 하지 않는 경우, 의무재직 기간은 '19. 8. 31까지 유예

## 32. 의무재직을 불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Α

- ☞ 의무재직 불이행자는 '장학금 반환' 또는 '향후 의무재직' 중 선택해야 합니다.
  - 장학금 반환 선택 시 실제 재직일수를 감하여 반환금을 계산합니다.
    - 반환금액=(재학 중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 × (잔여 의무기간 / 총 의무재직일\*)
    -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120일
  - **향후 의무재직** 선택 시 해당 의무재직 기간 종료 일자(반기종료일)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의무 재직을 이행 완료해야 하며, 불이행 시 환수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 의무재직 불이행자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기 수혜금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재선발이 가능합니다.



## 33. 휴학을 하게 되면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나요?



☞ 휴학이 3년(6개 학기)을 초과할 시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됩니다.

34.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되고 싶은데, 일하면서 학교 다니느라 성적이 70점 이하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나요?

#### A

- ☞ 성적 요건 미충족 학기에 대한 장학금 수혜는 불가합니다. 지원요건 1회 미충족이신 경우, 계속 장학생 자격이 상실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학기에 별도 신청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 됩니다.
  - ※ 계속장학생 자격은 지원요건(재직 요건, 성적 등) 미충족이 누적으로 2개 학기일 경우 상실됨
- 35.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면 의무재직은 어떻게 되나요? 재참여가 가능하나요?

## A

☞ **자격 상실 이후에도 의무재직은 유효**하고, 잔여 의무재직 분의 장학금을 반환 시에는 의무재직에 서 해제됩니다.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후 **신규장학생으로 재참여는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단, 본인 포기의 경우 제외)

36. 장학금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은 금액이 0원입니다. 이런 경우, 신규장 학생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 지급전 본인 포기 또는 반환 등으로 수혜금액이 0원인 경우, 신규장학생으로 추후 참여 가능합니다.